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50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정희용 · 백종현 · 이인선
이상휘 · 서천호 · 이양수
조승환 · 이소희 · 고동진
박준태 · 김용태 · 이달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해녀어업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으로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감소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녀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음. 아울러 해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수준에 편차가 있으며, 해녀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해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전·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

· 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진료비 및 생활안정 지원,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잠함병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또는 어촌계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녀 양성교육,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어업의 지속가능한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녀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어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녀 및 해녀어업의 현황과 전망
3. 해녀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녀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해녀어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녀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녀 및 해녀어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녀증의 발급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신고자 중에 “해녀어업”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경우
2. 해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주소이전 등으로 해녀 어업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해녀증의 발급·취소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녀증의 발급·취소, 사후관리 및 협조 요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규해녀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최초로 해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40세 미만의 해녀(이하 “신규해녀”라 한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에 필요한 자금(이하 “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해녀의 해녀어업 종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녀어업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절차·방법과 제3항에 따

른 환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녀가 잠함병[「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어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해녀

2. 해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등 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 신청·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고령해녀의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70세 이상의 해녀에 대하여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산물 판로 확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수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어촌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녀어업의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활성화와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가공 및 상품 개발
2. 해녀어업 관련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해녀의 창업·경영·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해녀어업의 활성화와 해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또는 어촌계가 수행하는 어장 정화, 해양폐기물 수거, 유해생물 제거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녀 양성교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교육훈련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어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어업 관련 전시회·박람회·세미나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해녀어업의 가치 전승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료 발간
3. 그 밖에 해녀어업의 국제교류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

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